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5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김기현・박충권・김소희

김석기 • 유상범 • 고동진

김 건 • 박준태 • 김상훈

구자근 · 김선교 · 김예지

김형동 • 윤영석 • 서천호

최은석 • 박정하 • 최보유

최수진 · 조정훈 · 엄태영

정연욱 • 백종헌 • 이준석

임종득 • 권영진 • 최형두

한기호 · 김장겸 · 박성민

김상욱 • 유용원 • 김대식

서범수 의원 (3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본래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부터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나, 현재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략함으로써 '방탄 국회'라는 오명 속에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도임.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등에서는 의원

총회 등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국민에게 서약하는 등 특권 내려 놓기에 동참한 바 있고,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도 공약화하는 등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만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 출석은 국회의원의 의무임을 감안할 때,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에 헌법상 근거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인의부정과 비리를 비호 하는 방탄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의원 스스로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하고,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의 제출 없이 결석하거나, 구속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자율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제4항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불체포특권의 자발적 포기) 체포 동의를 받은 해당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청가 및 결석)"을 "(청가 및 결석, 수당 등 지급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활동비"를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월정액 지원 경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을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 제4항의 수당 등의 감액과 환수된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이하 이 조에서 "수당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수

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④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된 수당 등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가서 및 결석신고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2(불체포특권의 자발적 포기) 체포 동의를 받은 해당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는 서약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한다.
제32조(<u>청가 및 결석</u>) ① (생	제32조(<u>청가 및 결석, 수당 등 지</u>
략)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u>급 제한</u>)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	「국회의
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	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u>특별활동비</u>	한 법률」에 따른 <u>수당, 입법활</u>
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	동비, 특별활동비와 국회규칙으
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u>로 정하는 월정액 지원 경비</u> -
<u><신 설></u>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

<u><신</u>설>

③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으로 정한다. 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이하 이 조에서 "수당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④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 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거 나 환수된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⑤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 제4항의 수당 등의 감액 과 환수된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